



2024.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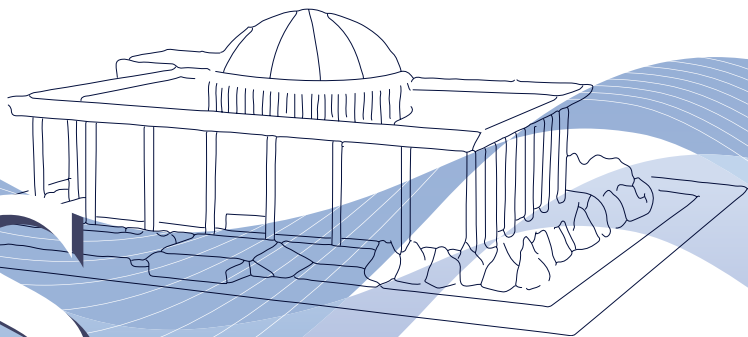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제11호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52) 입법영향분석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

김규호 |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 NARS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52] 입법영향분석**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 -**

---

김규호(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2024. 9. 19.



# NARS

---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4. 9. 19.)되었습니다.

## 요 약 표

분석대상	대상조항	「비료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25752) 제14조제1항		
	입법배경 및 목적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내용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규제유형	규제 변경(강화)		
입법영향분석	주요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지토양의 방사능 등에 의한 오염 예방에 대한 영향) 비료 원료의 종류와 그 원산지에 따라 비료의 안전성·유해물질(성분) 함유 수준 등이 달라지는 가능성을 전제할 시, 비료가 직접 투입되는 농경지토양이나 이러한 토양에서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작물 등의 중금속·방사능 오염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행 비료 원료의 안전성 보장 체계나 국내의 방사선·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등의 작동 효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지는 불확실</li> <li>• (농업인의 심리와 영농 안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보다 신뢰가 가는 비료의 사용이나 영농 활동의 안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적으로 농가가 비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li> </ul>		
	분야별 영향분석	정치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비료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유통 등의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한 사안별 규제당국의 구분·확정 및 이들 주체간 업무협조·소통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발생</li> <li>• (제도 이행 점검 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류 점검 등은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중인 생산·유통경로별 부정·불량비료 단속 업무의 일환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실제 확인·검증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분석인력과 시설·장비 등에 비용 소요</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① 포장 교체를 위한 필름</li> </ul>	

인공영양편의식	비용과 편익	산업	<p>인쇄용 동판 제작 비용 등 발생, ② 투입재와 최종재에 일종의 ‘전환효과(Diversion Effect)’ 발생 가능성도 존재</p> <p>③ 비료 품질에 대한 시장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면 매출·수출 신장 등에 기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비료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가 소비자(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 우려</li> </u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순환사회 지향에 미치는 영향) 농축수산부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품질 관리와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으로, 이들 폐기물(자원)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수거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자원의 순환과 효과적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li> <li>•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비료 소비자(농업인)에게 비료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알권리 보장</li> </ul>	
	비용과 편익	주요 항목 (정성)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판제작비 등 원료 원산지 표시에 따른 비용</li> <li>② 농축수산부산물 등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 시스템 구축·유지비</li> <li>③ 비료 원료 원산지표시제의 이행 상태 점검 비용</li> <li>④ 생산비 증가 비용 일부 전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li> </ul>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내 판매와 수출 증가 가능성</li> <li>② 순환경제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li> <li>③ 농업인 알권리 보장 등</li> <li>④ 토양안전성 등 환경 수준 향상 가능성</li> </ul>	
	AHP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의 중요성보다 비용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비용 가중치: 0.676, 편익 가중치: 0.324)</li> <li>• 특히 비용 세부항목 중에서는 두 항목(② 농축수산 부산물 등의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유지비, ④ 생산시 늘어나는 비용의 일부 전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을, 그리고 편익 세부항목 중에서는 한 항목(④ 토양안전성 등 환경수준 향상 가능성)을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함</li> </ul>	

<p>이해관계자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산업계)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낮은 실현 가능성, 제도 도입의 실익에 대한 의문, 허위광고 적발 시 이미 현행법령에 의하여 처벌 가능한 사실, 제도 도입 시 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li> <li>•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비료 품질에 중요한 요소로 보기 힘들고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일부 비료 원료는 원산지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li> <li>• (환경부) 어류부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수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이의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제약할 수도 있어 개정안에 반대</li> <li>• (해양수산부) 패류 6종에 한하여는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나 그 필요성 여부나 이후의 수거·(원산지별)구분 유통 등 후속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li> </ul>
<p>유사입법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li> <l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li> </ul>

# 차 례

## □ 요약표

### I. 분석 대상 / 1

- 1. 입법 배경 및 목적 ..... 1
- 2. 주요 내용 ..... 2

### II. 입법영향분석 / 5

- 1. 주요 영향분석 ..... 5
  - 가. 농경지토양의 방사능 등에 의한 오염 예방에 대한 영향 ..... 5
  - 나. 농업인의 비료 원료에 대한 신뢰와 영농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 8
- 2. 분야별 영향분석 ..... 11
  - 가. 정치행정 분야 ..... 11
  - 나. 경제산업 분야 ..... 14
  - 다. 사회문화 분야 ..... 18
- 3. 비용과 편익 분석 ..... 19

### III.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25

- 1. 의견수렴 대상 ..... 25
- 2. 주요 내용 ..... 25

### IV. 유사입법례 / 29

### V. 사후분석 제안 / 33

## □ 참고문헌

## 표 차례

[표 1] 신·구 조문 대비표 .....	3
[표 2]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2012) .....	9
[표 3] 농가의 부산물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2020) .....	10
[표 4] 농가의 유기농업자재 구매 시 고려사항(2020) .....	10
[표 5] 2022년 부정·불량비료 단속 실적 .....	13
[표 6] 포장지 교체 비용 추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	14
[표 7]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	21
[표 8] AHP 분석 결과 .....	23
[표 9]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질문지 .....	24
[표 10]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과 제시 의견 .....	25



## 그림 차례

- [그림 1] 부속유기질비료 원료로서의 수산부산물 배출·수거·운반 과정 ..... 6
- [그림 2]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장비용의 생산자·소비자 부담분 도시 ..... 17

## I. 분석 대상

### 1. 입법 배경 및 목적

-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sup>1)</sup>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가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 불량비료를 생

- 
- 1)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 8. (생략)
  - ③ ~ ④ (생략)
- 2) 「비료관리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산·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sup>3)</sup>

-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보통비료는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sup>4)</sup>이 설정된 것’을 말함(「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 흔히 ‘화학비료’, 혹은 ‘무기질비료’라 통칭하는 비료가 보통비료이며, 현행 공정규격상 질소질비료(17종), 인산질비료(6종), 칼리질비료(3종) 등

- 3) 다만 개정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불량 비료 유통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기는 하나(예를 들어 2022년에는 128건의 단속 실적이 존재함), ‘투입하지 않은 원료의 허위 기재’는 실제 단속 실무 범주에서는 ‘보충성분의 미달’이나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등을 의미하므로 법적 미비 사항과 관련이 없고,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 광고한 사례’의 경우 그러한 일이 적발되었거나 존재한다고 알려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임
- 4) 「비료공정규격」은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함(「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 국내에서 비료를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공급하려면 그 비료가 반드시 ‘비료공정규격’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함

81종에 이름

- 부산물비료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함(「비료관리법」 제2조 제3호)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부엽토 등 9종), 유기질비료(어박, 골분,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18종) 등 31종에 이름
- 현재 이들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붙이는 비료생산업자의 보증표에는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실중량 또는 실용량, 보증성분량, 원료명 및 투입비율, 생산연월일, 유통기간,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sup>5)</sup>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여기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도 추가하려는 것임

[표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보증 표시를 하여야	① ----- ----- ----- ----- ----- 유통기한, 비료제조에

5)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이 대신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를 표시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u>사용된 원료의 원산지</u>-----                      -----                      -----                      -----                      --- <u>유통기한,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II. 입법영향분석

### 1. 주요 영향분석

#### 가. 농경지토양의 방사능 등에 의한 오염 예방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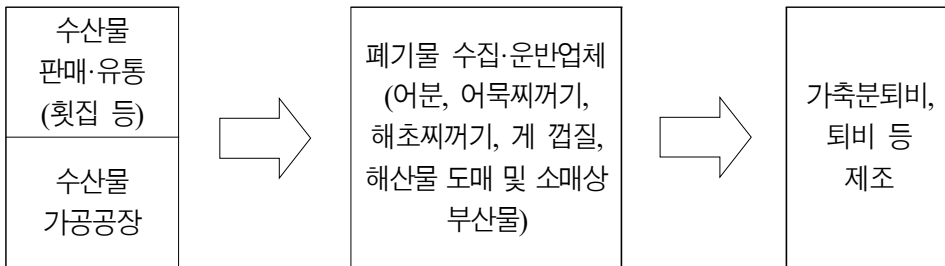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는 어느 한 제품에 완제품 자체(예: 김치)의 원산지, 혹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료(예: 김치에 들어간 고춧가루)의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소비자 선호의 차이 등이 존재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운용되곤 함<sup>6)</sup>
- 비료는 종류에 따라 천연광물, 농림축산부산물, 수산부산물 등 여러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며, 이러한 원료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되고 있음
  - 예컨대 보통비료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 카타르 등 해외에서 들어오고,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도 유기질비료의 주된 원료인 채종유박, 아주까리유박 등의 박류는 거의 전량 수입(인도, 브라질 등)에 의존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주원료(가축분뇨, 농축수산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 등)는 상당 부분을 국내 발생분으로 충당하고 있음
    - 예컨대 가축분뇨는 상당량이 퇴비(75.3%)와 액비(11.7%)로 제조되어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sup>7)</sup>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도 재활용량의

6) 한편 수출입 상황에서 무역협정 등에 기반한 관세 적용 사안 등과 관련하여서도 원산지 규정(원산지결정, 원산지증명, 원산지표시 등)이 중요한 의미·의의를 갖기는 하나, 이는 본 개정법률안과 논점을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28.6%가 퇴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sup>8)</sup>

- 수산부산물<sup>9)</sup>의 경우 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유통업체(외식업 포함)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뼈, 껍질, 지느러미 등)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소각·매립·재활용 등의 처리를 위해 수거하면 이 중 일부가 비료제조업체에 의해 가축분퇴비,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구조임

[그림 1] 부숙유기질비료 원료로서의 수산부산물 배출·수거·운반 과정



- 이런 상황에서 비료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은, 원료의 종류와 그 원산지에 따라 비료의 안전성·유해물질(성분) 함유 수준 등이 달라지는 가능성을 전제할 시, 비료가 직접 투입되는 농경지토양이나 이러한 토양에서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작물 등의 중금속·방사능 오염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행 비료 원료의 안전성 보장 체계나 국내의 방사선·방사능 오

7)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2023.3.29.  
 8) 김동욱,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정책 전환 필요」, 『워터저널』 2024.3월호, 2024.3.27.  
 9)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음식물류폐기물’로 처리되며, 상술하였듯 이러한 음식물류폐기물 역시도 퇴비의 원료로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염 감시체계 등의 작동 효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지는 불확실함

- 현재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sup>10)</sup>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이나 「비료공정규격」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퇴비 부속도 검사 기준’,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중금속·방사능 기준 등이 공급사슬의 전단에 위치하여 비료 원료의 안전성을 직·간접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예컨대 수입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서 수입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을 검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비료관리법」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에 의거 수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함<sup>11)</sup>
  - 한편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현장검사 등을 거쳐 중금속, 방사능 등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검사를 포함하여 매 건별 검사를 시행 중이며, 부적합 식품은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통보한 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있음<sup>12)</sup>

10) 「비료관리법」 제18조(품질검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11)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접 8개 현<sup>13)</sup>의 수산물(50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오고 있음
  - 또한 일본산 농수산물은 수입금지 대상 지역 외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도 매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이라도 검출 시 수입자에게 스트론튬 등을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215개소 방사선 감시소를 통해 전 국토 환경방사선·방사능 준위변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생활환경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그 결과를 공표<sup>14)</sup>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는 농지를 비롯한 다양한 토양시료와 쌀, 배추, 옥수수, 솔잎 등의 식품시료·지표식물 등도 포함됨
- 국내 농경지토양이나 농작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매년 점검하므로<sup>15)</sup> 유사시 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나. 농업인의 비료 원료에 대한 신뢰와 영농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 비료 원료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

- 12) 이러한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 내의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 카테고리나 ‘안전정보 > 방사능 정보’ 카테고리에 매일 공개되고 있음
- 13)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지바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 14) 해당 자료(연도별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https://nsic.nssc.go.kr>) 내의 ‘방사선안전 > 환경방사능감시 > 전국토환경방사능감시’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음
- 15) 아직은 이렇다 할 이상징후가 보고된 바 없음

시키고 보다 신뢰가 가는 비료의 사용이나 영농 활동의 안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적으로 농가가 비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농가가 비료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토양 적합성 및 효과, 품질, 가격 등으로 나타남
  - 가령 무기질비료(보통비료) 구매 시에는 ‘경작 토양과의 적합성’(52.0%), ‘품질’(26.7%), ‘가격’(16.0%) 등이 주요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남<sup>16)</sup>

[표 2]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2012)

구분	회사/상표	가격	품질	경작 토양과의 적합성	기타	계
구성비(%)	4.1	16.0	26.7	52.0	1.2	100.0

주: ‘경작 토양과의 적합성’은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지원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비료를 효과적으로 사용·절감하는 체계와 관련이 있음

자료: 박기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2., p.81.

- 부산물비료 구매 시에도 비료의 효과와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이 주된 고려사항임
  - 성재훈 외(2020)<sup>17)</sup>의 조사 결과 부산물비료 구입 시에 농가는 효과(31.3%), 품질 안정성(19.9%), 가격(19.3%) 등의 요소를 1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함
  - 안인 외(2020)<sup>18)</sup>는 일부 부산물비료를 포함한 유기농업자재 구입 시

16) 박기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2.

17) 성재훈 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18) 안인 외,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

의 주요 고려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효과(41.8%) > 품질 안정성(30.9%) > 가격(10.9%)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두 연구에서 모두 강조되는 ‘품질 안정성’은 부산물비료의 특성상 균질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표준화된 제품을 기대하기가 보통비료보다 상대적으로 불안한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원산지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표 3] 농가의 부산물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2020)

(단위: %)

구분	가격	효과	품질 안정성	원료 종류	브랜드	주변 추천	원활한 공급
1순위	19.3	33.7	19.9	17.2	0.9	3.4	5.5
2순위	24.4	26.3	19.0	13.0	0.6	4.8	11.7

자료: 성재훈 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p.58.

[표 4] 농가의 유기농업자재 구매 시 고려사항(2020)

구분	가격	효과	품질 안정성	원료 종류	브랜드	주변 추천	계
구성비(%)	10.9	41.8	30.9	7.3	1.8	7.3	100.0

주: 원문에서는 1순위 고려사항과 1·2순위 합산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으나, 1·2순위의 합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공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1순위 고려사항만 재가공하여 인용함

자료: 안인 외,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 2020.12., p 59.를 재가공

- 즉 보통비료든 부산물비료든 농가의 주요한 관심은 비료와 그 성분함량이 토양 및 작물에 지속적·안정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품질, 가격 등에 집중되고, 원산지는 그리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

협동조합, 2020.12.

- 물론 이는 설문조사 시 ‘원산지’가 선택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각 저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 동향과 사전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애초 ‘원산지’ 항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임

## 2. 분야별 영향분석

### 가. 정치행정 분야

- 개정안으로 인하여 우선 비료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유통 등의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한 사안별 규제당국의 구분·확정 및 이들 주체간 업무협조·소통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단속적(斷續的)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비료’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화이지만, 비료(특히 부산물비료)의 원료인 각종 부산물류나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 소관의 업무인 데 기인함
  - 또한 비료가 투입되는 농경지도양의 오염 문제도 환경부, (방사능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임
- 특히 수산부산물의 경우 그 세분류나 공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에 각기 규정된 바대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선 지자체에 위탁된 업무도 많은 만큼, 사안과 이슈별로 규제당국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의 책임 소관을 분명히 하려면 행정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sup>19)</sup>

19) 여기에서는 수산부산물만 예로 들었지만, 농림축산부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 등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포괄적으로 정의되나, 동법 제3조제4항<sup>20)</sup>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에는 이 중 패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6종의 껍데기에 한정되고 있음
  - 즉 패류부산물을 제외한 어류부산물 등의 수산부산물 발생량이 패류부산물의 2배를 상회하고<sup>21)</sup> 이 모두가 ‘수산부산물’이며 동종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공통점과 비료 등의 원료로서 유사한 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패류부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 어류부산물은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혹은 재활용 자원으로 각기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더하여 실제 이들 부산물의 수거·운반 실무 관련 관리·감독은 많은 부분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산부산물이라는 비료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 배출·유통 등의 시스템 구축·유지 과제를 어느 공적 주체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담당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비용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양한 종류의 비료 원료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행정적 고민·검토가 필요할 것임

- 2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1)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 규모는 연간 약 85~13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패류부산물은 약 48만 톤 수준임(유제범·김경민,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2.20.)

- 일차적으로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중인 생산·유통경로별 부정·불량비료 단속 업무의 일환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비료의 중량이나 보증성분 미달 여부, 유해성분 초과 여부,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여부, 염분 함량, 허위·과장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이미 매년 이뤄지고 있음

[표 5] 2022년 부정·불량비료 단속 실적

구분		적발건수
부정	무등록비료제조(수입) 판매	-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제조(수입) 판매	-
불량	중량 미달비료 생산·판매	-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48
	등록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2
	보증성분 미달	59
	유해성분 초과	10
	기타(염분, 수분 등)	9
기타	비료 포장대 표기 사항 위반	-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	-
	변경·보고·명령사항 미준수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다만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실제로 확인·검증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분석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

나. 경제산업 분야

(1) 기업(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영향

-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비료의 현 포장을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시한 것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필름인쇄용 동판 제작 비용이 발생하게 됨
- 부산물비료에 한정할 시 그 비용은 약 33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말 기준 부산물비료 등록비종은 4,564개이고, 각 비종당 평균 등록제품 수는 3개, 원료 수입국은 최소 3개국임
  - 포장지 변경 시 동판 제작비용이 개당 8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포장지 교체에 따른 비용은 최소 3억 2,86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음
    - 4,564비종 × 3개 제품 × 3개 수입국 × 80만 원 = 3억 2,860만 원

[표 6] 포장지 교체 비용 추정(부산물비료생산업체)

등록비종	비종 당 제품 수	원료 수입국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교체비용
4,564개	평균 3개	최소 3개국	80만 원/개	약 3억 2,860만 원

자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여기에 ‘보통비료’ 생산업체도 포장을 교체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전체 비료 생산업체의 동판 제작 비용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것임
- 다만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부산물비료 부문과 달리 보통비료 부문은 국내 시장의 95% 이상을 남해화학, 동부팜한농, 풍농, KG케미칼 등 7~8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만큼, 포장지 교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됨

- 이러한 비용은 신규 수입국이 생길 때마다 발생할 것이며, 시장 상황과 수입 선의 변화에 따른 포장 폐기 비용 또한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만일 비료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비료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비료생산업체가 상대적으로 ‘국산’ 원료를 확보하기 쉬운 가축분뇨 등의 사용량을 늘리거나, ‘가축분퇴비·퇴비’보다 ‘혼합유기질비료’ 생산량을 더욱 늘리는 등 투입재와 최종재에 일종의 ‘전환효과(Diversion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산부산물 등의 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산지별 분리 배출·유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 중 일부가 그 수요처인 비료생산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축분뇨 등은 그 자체가 ‘국산’이므로 비료 원료간 상대비용의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산부산물을 바로 가축분퇴비나 퇴비와 같은 ‘부속유기질비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분이나 어박으로 1차 가공한 뒤 ‘유기질비료’의 하나인 혼합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면 이 경우의 어분·어박은 ‘국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비료생산업체가 착안할 수도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은 제품의 성격과 가공도 등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 실질변형(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근거하여 이뤄지는데, 어분·어박의 경우 외국산 수산물의 부산물을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공기술의 수준이나 제조원가 항목 등과 관련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국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큼
    - 일례로 어분(품목번호 2301.20)의 원산지 결정기준<sup>22)</sup>을 살펴보면, 한-

22) 이는 관세청이 운용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아세안 FTA에서는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고, RCEP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제3류인 ‘어류’의 원산지가 어디든 어분(23류)은 그 어분으로의 가공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로 결정되는 체계임

- 이 논리를 연장하면 어류부산물의 원산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분으로 가공되어 혼합유기질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게 된다면 그 어분은 ‘국산’이라는 논리가 성립 가능해 보임

□ 다만 이러한 원가 인상 요인이나 원료의 전환 현상 등이 비료 품질의 제고나 적어도 비료 품질에 대한 시장 신뢰의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비료생산업체의 국내 판매와 수출 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 소비자에 대한 영향

□ 비료생산업체가 원료를 들여오고 생산한 비료를 포장하는 과정 등에 비용이 발생할 시, 그 일부는 비료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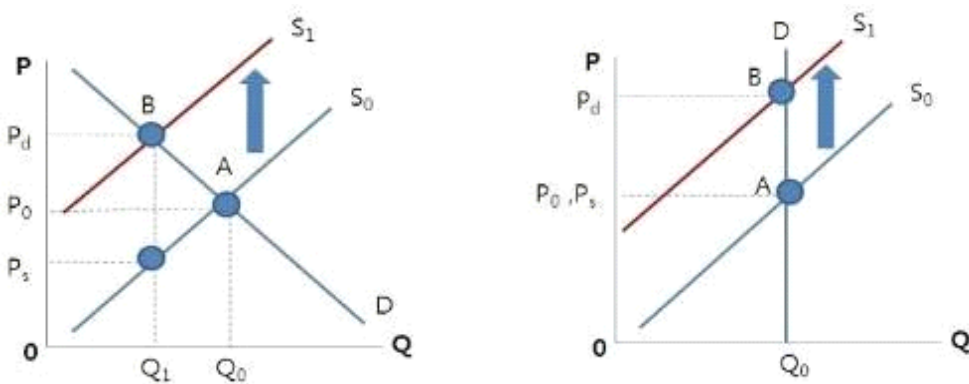
- [그림 2]의 왼쪽 그래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P_d - P_s)$ 를 개정안 시행 이전에 비하여 추가된 비용의 크기라고 할 때, 이 중 소비자는  $(P_d - P_0)$ 를, 생산자는  $(P_0 - P_s)$ 만큼을 부담하게 됨<sup>24)</sup>

23) 이는 또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 여기서는 농산물 가격의 결정요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비료를 중간재로 소비하는 것과 일반 대중이 농산물이라는 최종재를 소비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연쇄효과를 제한함

24) 이는 조세부담의 귀착이나 규제 효과의 전가 사례 등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과 동일함

- 원래의 균형가격(A)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새로운 균형가격인 B로 변하게 됨
  - 균형점 B에서 소비자는 이전( $P_0$ )보다 높은 가격인  $P_d$ 를 지불하게 되므로, 생산자는  $P_0$ 에서  $P_s$ 를 감한 만큼의 금액만 부담하게 됨
-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 부담분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가 공급변화보다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더욱 커지게 됨
- [그림 2]의 오른쪽 그래프는 극단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여 주는데, 이 경우 가격 인상의 부담을 온전히 소비자가 지게 됨
    -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생산자가 비용 인상분을 모두 가격 인상을 통해 상쇄하게 되는 것이 이 그래프의 의미임
- 물론 [그림 2]의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난 수요곡선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료’는 소비자(농업인) 입장에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여 쉽게 줄일 수 없는 영농 필수자재이므로, 비료생산업체로서는 비용 인상분을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실정임

[그림 2]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시장비용의 생산자·소비자 부담분 도시(圖示)



#### 다. 사회문화 분야

##### (1) (자원)순환사회 지향에 미치는 영향

- 개정안의 시행은 농축수산부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품질 관리와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우리 사회가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추세 속에서, 기존에 폐기물로 취급되다 점차 비료 원료 등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질들과 그 이용 방안,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다만 농축수산부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원산지별로 분리 배출·수거하는 일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이들 자원의 순환과 효과적 이용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2)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개정안은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업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다 선호하는 원산지에서 유래한 원료로 생산된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다만 한편으로 비료의 품질과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연계하여 사고해본 적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다소 혼란을 주는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음

### 3. 비용과 편익 분석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양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입법영향분석에서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를 분석함
  - 정량화(quantification)는 분석방법론과 분석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검증된 분석방법론과 유사 연구결과가 존재할 때에 한정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증된 방법론과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 방식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 이론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큰 경우에는 정량화가 어려운데, 입법영향분석의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델설계, 설문조사(한계지불의사액 조사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방식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함
    -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은 분석유형이 다양하고 분석 대상도 많지만,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화된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특히 명확한 분석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비용·편익분석은 오히려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현행 표시 사항에 더하여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시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유발하게 될 것임
  - ‘비용’의 경우 다음과 같이 비료제조업체, 정부 및 농축수산 부산물 수거업체, 그리고 소비자(농업인) 차원에서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비료제조업체) 동판제작비, 출고공정 보완 비용, 원료 원산지의 변경이나 비율 조정 시의 포장지 폐기 비용 등 ❶ 원료 원산지 표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 및 농축수산 부산물 수거업체) 개정안 시행의 선결 조건으로 ❷ 농축수산 부산물 등의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축·유지 비용이 발생<sup>25)</sup>하고, 이어 ❸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제 이행 상태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소비자)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면 그 일부가 ❹ 비료 가격 인상으로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농업인 부담도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개별 업체, 정부, 소비자(농업인), 환경 차원에서 예상할 수 있는 ‘편익’은 다음과 같음
- (기업체) 비료 품질에 대한 시장 신뢰도 제고 등으로 ❶ 국내 판매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농축수산 부산물 등을 활용하는 구체적 모델의 정립을 통해 향후 ❷ 우리 사회의 순환경제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소비자) ❸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원료 원산지 정보에 민감한 농업인이 있다면 비료를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이 생김
  - (환경) ❹ 원료 원산지에 따라 비료 품질에 차이가 존재할 시, 원료 원산지별 비료 구매·투입의 증감에 의해 토양 안전성 등 환경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25) 다만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부산물을 수거·처리하는 업체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임

[표 7]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용	기업체	❶ 동판제작비 등 원료 원산지 표시에 따른 비용
	정부 (❷는 농축수산 부산물 수거 및 처리 업체 포함)	❷ 농축수산 부산물 등의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유지비
		❸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 상태 점검·모니터링 비용
	소비자(농업인)	❹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전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편익	기업체	❶ 국내 판매와 수출 증가 가능성
	정부	❷ 순환경제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
	소비자(농업인)	❸ 농업인 알권리 보장 등
	환경	❹ 토양 안전성 등 환경 수준 향상 가능성

□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량화하거나 화폐화한 비용과 편익이 측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대안적 분석기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비용과 편익의 중요성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할 수 있음<sup>26)</sup>

- AHP 분석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각 계층에 포함된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비율 척도(ratio scale)로 측정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됨

26) 법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방법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법률안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AHP 기법을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관련 연구(이주석·송철중, 2023. 12.) 결과에서도 입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방안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다만 도출된 평가결과가 해당 법안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제한된 정보, 특히 정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평가의 수단으로 AHP가 활용됨
- 본 영향분석에서는 AHP 설문조사를 위하여 [표 9]의 질문지를 적용하여 관련 전문가 8명<sup>27)</sup>을 대상으로 4월 12~17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수거 후에는 응답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인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하여 그 값이 0.1을 초과하는 경우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부분적인 재설문을 통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확보함<sup>28)</sup>
- AHP 분석 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의 중요성보다 비용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편익의 중요성은 평균 0.324, 비용의 중요성은 평균 0.676으로 나타남([표 8] 참조)
- 평가대상 총 8항목(편익 4항목, 비용 4항목) 각각의 가중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각 항목의 가중치 기댓값은 0.125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편익 세부항목 중에서는 한 항목(④ 토양안전성 등 환경수준 향상 가능성)이, 그리고 비용 세부항목 중에서는 두 항목(② 농축수산 부산물 등의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유지비, ④ 생산 시 늘어나는 비용의 일부 전가에 따른 가격 인상)이 개정안 시행 시 다른 항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음

27) 국회입법조사처 내부 4명과 외부의 관련 학계 인사 4명으로 구성함

28) AHP를 창안한 Thomas L. Saaty는  $CR \leq 0.1$ 인 경우 답변의 일관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CR < 0.2$ 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수적 순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Saaty, 1980). 여기서는 사안의 엄중함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둘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인  $CR \leq 0.1$ 을 적용함

- 다만 평가자 8인 중 6인은 편익보다 비용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반면, 2인은 편익의 중요성을 또한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주의를 요함
- 편익이든 비용이든 어느 한 쪽을 더 높이 평가할 수는 있으나, 주목할 사실은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든 편익과 비용의 중요도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비용을 더 중요하게 본 전문가들은 ‘비용’ 부문에 0.857, 0.889 등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가 많으며, 편익을 더 중요하게 본 전문가 2인도 ‘편익’ 부문에 0.800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개정안에 잠재된 논쟁적 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8] AHP 분석 결과

구분	편익					비용				
	소계	①	②	③	④	소계	①	②	③	④
종합	0.324	0.049	0.029	0.095	0.150	0.676	0.118	0.233	0.123	0.202
평가자1	0.143	0.086	0.029	0.011	0.017	0.857	0.082	0.400	0.238	0.137
평가자2	0.250	0.015	0.032	0.049	0.153	0.750	0.215	0.071	0.051	0.413
평가자3	0.800	0.033	0.059	0.233	0.476	0.200	0.057	0.109	0.012	0.022
평가자4	0.111	0.057	0.004	0.036	0.013	0.889	0.194	0.577	0.040	0.078
평가자5	0.800	0.094	0.044	0.211	0.451	0.200	0.032	0.032	0.125	0.011
평가자6	0.143	0.013	0.007	0.088	0.036	0.857	0.073	0.499	0.249	0.036
평가자7	0.143	0.084	0.007	0.017	0.036	0.857	0.257	0.095	0.060	0.445
평가자8	0.200	0.009	0.052	0.118	0.021	0.800	0.037	0.084	0.207	0.472



[표 9]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AHP 질문지

구분	AHP 질문지																		
제1계층 이원비교	법률안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함																		
	Q: 본 법률안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중요한 고려사항인지, 기대되는 편익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인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비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편익
제2계층 쌍대비교	비용과 편익 각각의 세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함																		
	Q: 비용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비용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비용 B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③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Q: 편익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편익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편익 B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③	
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③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④	

### III.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1. 의견수렴 대상

-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은 비료산업계(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함

[표 10]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과 제시된 의견

이해관계자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비료산업계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2024.3. 서면 답변	신중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2024.4. 서면 답변	개정안에 반대
환경부	2024.4. 서면 답변	개정안에 반대
해양수산부	2024.4. 서면 답변	해양수산부 현행 소관 범위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나 그 필요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 2. 주요 내용

- 보통비료 업체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비료협회는 비료의 원산지제도는 「대외무역법」 등 별도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어 「비료관리법」에 원산지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 부산물비료 업체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제의 낮은 실현 가능성, 제도 도입의 실익에 대한 의문, 허위광고 적발 시 이미 현행법령에 의하여 처벌 가능한 사실, 제도 도입 시

업계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 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횃집)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원산지별로 구분·보관되지 않고, 다양한 원산지·재료가 섞인 상태 그대로 수거되므로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적·확인도 불가능함
  - 식당을 예로 들면 방문고객의 성향, 메뉴 등에 따라 수시로 국산과 외국산이 혼입된 상태로 조리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원산지별 혼입비율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단도 부재함
- 무기질비료나 채종박 등 박류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질 차이가 없고, 소비자(농업인)도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성분함량을 보고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임
- 만일 원산지와 관련된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관리·처벌이 가능함

□ **농림축산식품부<sup>29)</su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함

- 비료의 품질은 원료의 원산지보다는 질소·인산·칼리 및 유기물 함량 등의 성분 함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료 원산지 표시의 실익이 적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예가 없음
  - 원료의 출처별 성분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원료의 혼합 사용으로 최종 제품이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토양개량, 또는 양분공급이라는 비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 각국이 비료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에서 원산지 개념은 생소한 측면이 있음
- ‘농축수산물’은 원산지 구분 없이 혼합되어 배출·수거되고 있고, 특히

29)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의견을 함께 취합하여 제시함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수산시장, 횃집) 등에서 원산지 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추적·확인도 불가능하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폐기물 처리 시 배출업자별로 혼합된 형태로 수거·운반되어 비료업체에 공급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사항을 점검한다 하더라도 업체의 원산지 증빙서류만으로는 허위 입증에 사실상 불가능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낮음
- 현재 비료시험연구기관(\*23년말 기준 45개소)에서 원산지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려면 원산지 연구·분석이 가능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는 비용도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함

- 어류부산물이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산지별 분리배출·수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도리어 이의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가정, 소형음식점, 대량배출업소 등 배출원 구별 없이 혼합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이후 사료, 비료 등의 생산에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원산지 표시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재활용이 우선이고<sup>30)</sup>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등도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배치됨

30)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폐류 6종에 한하여는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나 그 필요성 여부나 이후의 수거·(원산지별)구분 유통 등 후속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부산물인 폐각(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경우, 국내산은 양식장 인근 작업장에서 배출되고 수입산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통해 배출되므로 원산지별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 보임
- 다만 수산부산물의 부처별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한편으로 비료 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이다 보니, 비료와 관련된 법률안 내용만으로는 해양수산부의 견해를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IV. 유사 입법례

-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로 우선 「대외무역법」을 들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제35조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거, 국내 생산물, 혹은 수입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식이 달라짐
  - 예컨대 수입 원료를 사용한 어느 국내 생산물이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 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가공국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sup>31)</sup>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31) 관세청, 『2023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2023.12., p.61.

본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한편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 법률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sup>32)</sup>과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29개 품목<sup>33)</sup>을 대상으로 함
- 특히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한두 원료가 98% 이상을 차지하면 그 원료들의 원산지만 표시함
  - 한편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가 있다면 그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

32) 국산 농산물 222개 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80개 품목으로 구성됨

3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낫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챙이, 전복, 방어, 부세



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이하 생략)

## V. 사후분석 제안

- 만일 이 법률안이 시행되어 비료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면, 그 이후 비료 시장과 토양 등 환경에 미친 영향이나 제도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분석을 적절한 시기(예: 5년 경과 후)에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혹은 지표가 확보·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비료 시장 규모와 수출입 관련 지표
  - 부정·불량비료의 생산·유통 단속 실적
  - 각 연도 부산물비료 원료별 투입 비중 및 그 변화
  - 비료 종류별 가격 및 원가 항목, 농가 생산비(비용 항목별) 등의 시계열 자료
    -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후의 일정 기간을 포괄하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제도 시행에 수반한 재정 투입 규모
  - 제도 시행 이후의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 특히 토양시료, 식품시료, 지표식물 등의 조사 결과
- 나아가 소비자의 제도 활용 실태나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임
  - 설문 문항은 비료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이용 현황, 원산지 국가별 소비자 평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되, 통계학적 분석을 염두에 둔 형태로 설계해야 할 것임

## 참 고 문 헌

- 관세청, 『2023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2023.12.
- 김동욱,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정책 전환 필요」, 『위터저널』 2024.3월호, 2024.3.
-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조사 회신자료」, 2024.4.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2023.3.29.
- 박기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2.
- 안인·정문기·최정호·이인애·윤상희·최주현·장만형·안진성,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 2020.12.
- 유제범·김경민,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제1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2.
- 성재훈·김태훈·추성민,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0.
- 이주석·송철중, 『법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2023.12.
- 한국비료협회, 「입법조사 회신자료」, 2024.3.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입법조사 회신자료」, 2024.3.
- 해양수산부, 「입법조사 회신자료」, 2024.4.
- 환경부, 「입법조사 회신자료」, 2024.3.
- Saaty, T.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Book Co., 1980.

##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2937호] 입법영향분석 -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사업 안전기준 법제화 - 지중화 사업 인·허가 발급 전 관계자 협의 의무화	2024. 9. 12.	이승만
제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9) 입법영향분석 :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따른 선거공영제의 합리화	2024. 9. 6.	허석재
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33) 입법영향분석 - 화재위험 높은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 지정 및 화재위험평가 도입 -	2024. 8. 30.	배재현 고영준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48] 입법영향분석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	2024. 8. 23.	정준화
제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2024. 7. 23.	김주경 임사무엘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4792호] 입법영향분석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	2024. 6. 28.	이동영
제4호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필요적 절차 -	2024. 4. 12.	입법영향분석 사 업 단
제3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 -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 온라인 유통 금지	2023. 12. 29.	심성은 김광현
제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2023. 12. 29.	김형진 김주경
제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	2023. 12. 29.	김강산 박인숙



##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1호

발간일 2024년 9월 19일  
발행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편집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4510(대표)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TEL 02 · 2269 · 5523)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 조직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3502-70-1(93360)  
발간등록번호 31-9735049-002111-01

© 국회입법조사처, 2024

##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대표) [www.nars.go.kr](http://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49-002111-01
ISBN	978-89-93502-70-1(93360)

